

2021년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8. 26.(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613건(안전번호 제2021-109125호~11213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109125호~109150호(순번 1번~26번)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영상물(방송)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안전번호 109127호(순번 3번)는 삭제되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안전번호 109151호~112137호(순번 27번~3013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48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61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3013번

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6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와 카페에서 애니메이션(방송) ‘☆☆☆☆☆’, ‘★★★★★’,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129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순번 1번, 2번, 5번, 6번, 13번 게시물의 경우 2021. 8. 23. 기준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됨.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3번(1건)의 게시물은 2021. 8. 23. 현재 게시자에 의해 삭

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순번 3번의 경우 채증 이후에 비공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해 이미 수차례 시정권고를 받은 자로서, 본인의 블로그가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서로이웃 공개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주기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며칠 간 전체공개한 후에 서로이웃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복제물 신고나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개설정 전환을 택하는 경우가 있음.
- B 위원: 순번 1번~2번, 순번 4번~26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

의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3번의 경우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을 함이 타당함.
- C, D 위원: 이견 없음. 순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합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27번~301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All Night (전화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96번은 웹하드에서 음악 'All Night (전화해)' 등을 50포인트에 제공 중

임. 가수 아스트로(ASTRO)의 앨범 전집을 제공하고 있음. 멜론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SW 'Adobe Indesign CC'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96번은 웹하드에서 SW 'Adobe Indesign CC'를 200포인트에 제공 중임. 어도비에서 공개한 SW로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출판 '절대수저 재벌인생!'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15번은 웹하드에서 출판 '절대수저 재벌인생!'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1화~제177화 완결본을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앱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퀘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862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퀘드'를 200캐시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2시간 12분을 제공하고 있음.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에서 2021. 8. 4. 공개한 미국 영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27번~301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27번~301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7번~301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09125호~112137호(순번 1번~3013번)는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2.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